회 칙 입 안 서

1. 법 규 명 칭: 총학생회 회칙

2. 재정(개정) 이유
   가. 회칙 내 기준점을 뚜렷하게 하고자 함.
   나.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 진행을 뚜렷하게 하고자 함.

첨 부: 1. 신구조문 대비표 1부
2. 직제규정 전문 1부

[총학생회 회칙] 신구조문 대비

입안 부서	재정(개정) 이유	현행	개정안	비고
총학생회				
	학생회비의 대한 사용하는 곳을 정확히 학우분들에게 명시해 드리기 위해서 이유를 정했습니다.	**제44조(경비의 관리)**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 의결 후 집행할 수 있다.	**제44조(경비의 관리)**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 의결 후 집행할 수 있다.(이것을 사무국 운영비라 칭함.) 제44-1조(여비 선정방법) ① 여비는 총학생회 본회의 활동에 사용하는 이동대상 지역까지 직행하는 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할 수 있다. ② 자차일 경우 유류비를 그 주 평균 유류비를 측정하여 거리와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 (예시 이동 총거리 x (유가/연비) + 통행료)	

중원대학교 총학생회 회칙

제1장 총칙	제5장 단과대학 학생회
제2장 전체 학생총회	제6장 동아리연합회
제3장 중앙운영위원회	제7장 *생활관운영위원회
제4장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, 집행부	제8장 *홍보대사, JR
제1절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	제9장 재정
제2절 집행부	제10장 선거
	제11장 회칙개정
	부칙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중원대학교 총학생회(이하 '본 회'라 한다)이다.

제2조 (목적) 본 회의 학칙 제60조에 의거, 상생의 교육이념과 상.경.신을 바탕으로 하는 건학정신에 따라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건전한 활동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, 나아가 중원대학교의 비전실천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회원의 자격) *본 회의 회원은 중원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휴학 및 정학중인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. (단 총학생회장의 재량으로 회원의 자격을 박탈 및 부여 할 수 있다.)

제4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본 회의 회원은 학칙과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, 본 회의 사업계획과 회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.
③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.

제5조 (구성) *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.

제6조 (특별기구)
① 총학생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조직 할 수 있다.
② 특별기구는 총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인사로 구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설치한다.

제2장 전체 학생총회

제7조 (지위) 전체 학생총회는 본 회의 심의/의결 기구이다.

제8조 (구성) *전체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과 본 회의 각 부서별 국장들로 구성된다.(단 국장 부제시, 지국장 혹은 부장이 대체 할 수 있다.)

제9조 (의장) 전체 학생총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 단, 총학생회장 탄핵/소추 시에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의장의 직을 수행한다.

제10조 (소집)
① 전체 학생총회는 중앙위원회 3/4 이상의 위원의 참석과 2/3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 또는 전체회원의 1/5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② *일정기간에 한번 씩 정기적인 소집을 진행한다.

제11조 (권한) 전체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/의결 한다.
1. 회칙 개정 및 패지에 관한 발의 및 발의권.
2. 총학생회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의 탄핵 소추권 및 해임에 관한 사항.
3. 각 자치기구장의 탄핵 소추권 및 해임에 관한 사항.
4. 기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전체 학생총회의 심의/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.

제12조 (의결) 전체 학생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중앙운영위원회

제13조 (지위)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 학생총회가 개회되지 못할 시 그 최고결정권을 위임받은 심의/의결기구이다.

제14조 (구성) *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, 총학생회의 각 국장,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, 각 단과대학 부학생회장, 동아리연합회장, 사생자치회장, 홍보대사으로 구성한다. 단, 탄핵소추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/의결의 경우 탄핵대상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된다.

제15조 (의장)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16조 (소집)
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.
②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.
③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.

제17조 (업무 및 권한)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.
1. 본 회의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의 심의/의결
2. 회칙 개정안의 심의/의결
3. 본 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
4. 기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/의결

제18조 (의결)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, 집행부

제1절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

제19조 (지위)
①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총학생회장은 전체 학생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③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유고 시 그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.

제20조 (임기)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0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한다. 단 임기 내 차기 총학생회장/부총학생회장의 선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, 차기 총학생회장/부총학생회장의 선출 완료 때까지

그 임기가 연장된다.

제21조 (신분보장)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.

제22조 (업무 및 권한)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.
1. 전체 학생총회를 소집하고 회의 운영을 주관.
2. *본 회의 집행부는 국장의 임명 및 제반 업무 총괄
3. 본 호의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.
4. 임기만료 전 까지 전체사업보고를 작성하고 다음 총학생회 회장에게 인계
5.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하는 특별기구의 장 임명.

제2절 집행부

제23조 (구성) *본 회의 집행부는 각 부를 둘 수 있으며, 각 부에는 지국장 및 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24조 (권한)
① *각 부의 지국장은 각 부서의 국장을 보좌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한다.
② 각 부의 부장은 12월 말까지 차기 집행부에 소관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 단, 선거가 연기되는 경우 차기 집행부 선출 후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해야 한다.

제5장 단과대학 학생회

제25조 (지위)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의 최고 자치기구이다.

제26조 (구성)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해당 단과대학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.

제27조 (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)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당해 단과대학을 대표하며 중앙운영위원이 된다.

제28조 (업무 및 권한)
①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 학생활동을 자치적으로 한다.
② 사업계획서, 예산안, 사업보고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
제29조 (회칙 및 조직) 각 단과대학 총학생회 회칙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갖는다.

제6장 동아리연합회

제30조 (지위)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.

제31조 (구성) 동아리연합회는 본 대학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와 그 회원으로 구성된다.

제32조 (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)
①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은 본 대학에 등록된 동아리의 대표 중에서 선출한다.
②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중앙운영위원이 된다.

제33조 (회칙) 동아리연합회는 총학생회 회칙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정한다.

*제7장 생활관자치위원회

제34조 *(지위) 생활관자치위원회는 생활관생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생활관 내의 최고 자치기구이다.

제35조 *(구성) 생활관자치위원회는 본 생활관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로 구성된다.

제36조 *(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) 생활관생들 전체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생활관생을 대표하며 중앙운영위원이 된다.

제37조 *(회칙) 생활관자치위원회는 생활관 내의 회칙을 준수하며, 독자적인 운영회칙을 정한다.

*제8장 홍보대사,JR

제38조 *(지위) 홍보대사와 JR은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홍보를 진행하는 자치기구이다.

제39조 *(구성) 홍보대사와 JR은 본 회의 모든 회원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, 공정한 면접과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다.

제40조 *(학생회장) 홍보대사들 중 대표로서, 중앙운영위원이 된다.

제41조 *(회칙) 홍보대사와 JR은 총학생회 회칙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갖는다.

제9장 재정

제42조 (재원)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기타수입으로 하고, 본 회의 활동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43조 (회비의 배분) 본 회의 회비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심의/의결하여 배분한다.

제44조 (경비의 관리)

①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 의결 후 집행할 수 있다.

(이것을 사무국 운영비라 칭함.)

제44-1조(여비 선정방법) (2022.02.07.)

① 여비는 총학생회 본회의 활동에 사용하는 이동 대상 지역까지 직행하는 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자차일 경우 유류비를 그 주 평균 유류비를 측정하여 거리와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(예시 이동 총거리 x (유가/연비) + 통행료)

제45조 (추가경정예산)

① 총학생회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대의원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0장 선거

제44조 (선거의 시기) *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,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, 각 단과대학의 부학생회장, 동아리연합회 회장, 생활관운영위원회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11월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 단,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다음해 3월중에 재선거를 실시한다.

제45조 (학생회 임원자격)
① 직전학기 평점평균 2.5 이상을 취득하고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로서 4학기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
② 제1항에서의 학생회 임원이라 함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, 총학생회의 각 부장,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, 각 단과대학 부학생회장, 동아리연합회장을 말한다.
③ 모든 임원진은 연임이 불가하다.

제46조 (선거관리위원회)
①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학생회 산하의 임시독립기구로서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'선관위'라 한다)를 둔다.
② 선관위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지명/위촉하는 5인이상 10인 이하의 본 회 회원으로 구성하며, 선관위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.
③ 선관위는 총학생회장/부총학생회장,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/부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.
④ 선관위의 운영과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따로 지정한다.

제47조 (선거방법)
① 본 회의 선거는 보통, 평등, 직접, 비밀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.
② 선거 30일 이전에 선거일, 선거방법에 대하여 공지한다.
③ 선거 15일 이전에 선거절차와 선거권자, 및 후보자에 대하여 공지한다.
④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은 2인1조로 입후보 하며, 학생 1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.
⑤ 단과대학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은 2인1조로 입후보 하며, 학생 5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.
⑥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와, 유효 투표의 과반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투표자가 재적회원으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투표기간을 1일 연장한다. 연장투표결과 투표자가 재적회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선거는 무산된다.
⑦ 선거의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선관위는 당선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접수, 심의 처리한다.
⑧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의 개정권은 선관위에게 있다.

제11장 회칙개정

제48조 (발의)
① 회칙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발의할 수 있다.
   1.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발의.
   2. 회원 1/5 이상의 동의에 의한 발의.
②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즉시 공고한다.

제49조 (의결) 발의된 회칙개정(안)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9조 (공포 및 발효)
①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.
②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) 본 회칙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. 단 회칙의 개정 내용에 따른 발효시한에 대한 특별 부칙을 둘 수 있다.